



제418회국회(정기회)
제2차 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 〉

■ 김용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14호)

2024. 9.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참고자료 1】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현황	6
【참고자료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7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용태 의원 등 12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2.
3. 회부연월일 : 2024. 8.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대학이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그런데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되면서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에서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생활·진로설계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 고등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대학 등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

Ⅲ. 검토의견

개정안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7제1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신설>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생략)	② (현행 제1항과 같음)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 ----- -----.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3항에----- ----- ----- -----.

현행법 제34조의7¹⁾(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은 대학의 장으로 하여금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한국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는 두고 있지 않음.

한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육국제화특구²⁾(2024년 9월 현재 18개 지역이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운영되고 있음)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사업을

1) 「고등교육법」

제34조의7(외국인 학생의 선발 등) ① 대학의 장은 재외국민, 외국인 대상의 입학 전형 자료로 어학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학 능력 중 한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한국어능력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한국어능력시험의 시기, 방법,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교육국제화특구”란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구의 지정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교육감이 공동으로 요청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및 교육감은 공동으로 교육부장관에게 특구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 및 교육감이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특구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어 교육 및 국제화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2. 초·중등학교의 외국어 교육 및 지역사회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대한 수요가 형성되어 있을 것
3.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시·도보다 우수할 것
4. 그 밖에 특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절차와 제5항에 따른 구체적 지정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하는 경우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³⁾하고 있는바, 교육국제화특구 안의 대학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외국인 유학생 확대에 대한 요구가 증가 되면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인바,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교육부는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의 법적 기반이 필요하고,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학생을 국내 취업·정주시키는 데에 필요한 정책 수립의 근거도 필요한 현실임을 고려하여 찬성 입장임.

3)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 ① 특구 안의 대학은 교육의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및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특구 안의 대학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외국대학과의 공동·복수 학위제, 교육과정의 공동운영 및 학점교류의 확대

2. 외국대학과의 학생 및 교수 교류 확대

3. 외국인 학생 유치 확대

4. 해외 우수 대학의 교육프로그램 유치

5. 그 밖에 대학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가 또는 특구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특구 안의 대학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추진하는 경우 장학금, 기숙사 및 취업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187

참고자료 1

교육국제화특구 지정 현황

명칭	위치		면적	추진분야
	시·도	시·군·구 등		
대구 북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북구	94.09km ²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대구 달서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62.34km ²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연수구 교육국제화특구	인천광역시	연수구	56.2km ²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고등교육
인천 서부 교육국제화특구	인천광역시	서구·계양구	182.63km ²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전남 여수 교육국제화특구	전라남도	여주시	502.76km ²	초·중등교육/ 산업인력양성
경기 안산·시흥 교육국제화특구	경기도	안산시·시흥시	292.795km ²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인재육성
부산 중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중구	3.01km ²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부산 남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남구	26.82km ²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부산 해운대구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51.54km ²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해외 인재 유치
부산 서부산 교육국제화특구	부산광역시	사하구·사상구	77.9km ²	교육과정혁신
대구 수성구 교육국제화특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76.46km ²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해외 인재 유치
광주 광산구 교육국제화특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222.9km ²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해외 인재 유치
세종 교육국제화특구	세종특별자치시	-	464.9km ²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교원 육성
경기 화성 교육국제화특구	경기도	화성시	844km ²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충남 천안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천안시	636.2km ²	교육과정 혁신/ 해외 인재 유치
충남 당진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당진시	664.1km ²	해외 인재 유치/ 교육과정 혁신
충남 홍성·예산 교육국제화특구	충청남도	홍성군·예산군	989.4km ²	교육과정 혁신/ 세계시민 양성
제주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제주특별자치 도	서귀포시	871.47km ²	교육과정혁신

자료 : 교육부

참고자료 2

외국인 유학생 현황 ※ 출처 : KEDI 교육통계(매년 4.1. 기준)

< 연도별 유학생 수 >

(단위 : 명)

구 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3년대비 증감
학생수	91,332	104,262	123,858	142,205	160,165	153,695	152,281	166,892	181,842	208,962	+27,120

< 2024년 지역별·과정별 유학생 현황 >

(단위 : 명, %)

지역		합계		4년제		전문대		대학원		어학연수 등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수도권	서울	74,488	35.7	30,353	38.4	121	0.8	21,261	40.8	22,753	36.0
	인천	4,772	2.3	2,343	3.0	252	1.7	772	1.5	1,405	2.2
	경기	37,683	18.0	12,652	16.0	5,917	40.6	8,543	16.4	10,571	16.7
	소계	116,943	56.0	45,348	57.4	6,290	43.2	30,576	58.6	34,729	55.0
非 수도권	부산	14,961	7.2	6,030	7.6	272	1.9	3,583	6.9	5,076	8.0
	대구	5,951	2.9	1,644	2.1	844	5.8	1,127	2.2	2,336	3.7
	광주	6,339	3.0	2,749	3.5	32	0.2	1,523	2.9	2,035	3.2
	대전	11,919	5.7	4,138	5.2	943	6.5	3,141	6.0	3,697	5.9
	울산	1,079	0.5	235	0.3	185	1.3	407	0.8	252	0.4
	세종	1,014	0.5	494	0.6	29	0.2	342	0.7	149	0.2
	강원	5,422	2.6	2,167	2.7	916	6.3	1,147	2.2	1,192	1.9
	충북	5,484	2.6	2,320	2.9	367	2.5	1,253	2.4	1,544	2.4
	충남	11,262	5.4	3,917	5.0	1,812	12.4	2,569	4.9	2,964	4.7
	전북	8,036	3.8	3,052	3.9	748	5.1	1,697	3.3	2,539	4.0
	전남	4,700	2.2	1,174	1.5	300	2.1	1,722	3.3	1,504	2.4
	경북	11,369	5.4	4,696	5.9	1,270	8.7	1,891	3.6	3,512	5.6
	경남	3,304	1.6	811	1.0	369	2.5	790	1.5	1,334	2.1
	제주	1,179	0.6	279	0.4	193	1.3	386	0.7	321	0.5
	소계	92,019	44.0	33,706	42.6	8,280	56.8	21,578	41.4	28,455	45.0
합계		208,962	100.0	79,054	100.0	14,570	100.0	52,154	100.0	63,184	100.0

자료 : 교육부